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95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“라 한다)“란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(하부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적십자사 사업“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활동지원) ①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·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6.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
②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보조금신청,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표창)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